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이동주 의원)

의안 번호	15-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3. 24.

발의자 : 이동주, 강희향, 문정애, 백남환,
송병길, 유호렬, 이봉수, 이필레,
이학래, 전승학, 한일용, 허정행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(洞) 자치회관 대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,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(洞)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. 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함.(안 제3조제5호 단서 신설)

3. 관계법규

가.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(의정활동 보고)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3. 24 ~ 2015. 3. 28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원칙)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3조(원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.</u></p>

관계 법규

공직선거법

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- 제111조(의정활동 보고)**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, 보고서(인쇄물, 녹음·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), 인터넷, 문자메시지,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·인사말(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통하여 의정활동(선거구활동·일정고지,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선거구민(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보고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·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.
-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첨부·게시할 수 있으며,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·장소 및 보고사항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)을 게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·주소(이하 이 조에서 "세대주명단"이라 한다)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구·시·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·교부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,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·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(명부사본의 교부)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명부"는 "세대주명단"으로 본다.
-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·수량,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

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[제정 2000.10.31 조례 제470호, 2014.11.20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]

제3조(원칙)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
3.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
4.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